

# 해양사고 중심으로 한 영해 내 투묘선박에 대한 법적 지위

† 명진혁, 정경복\*, 김창복\*, 이희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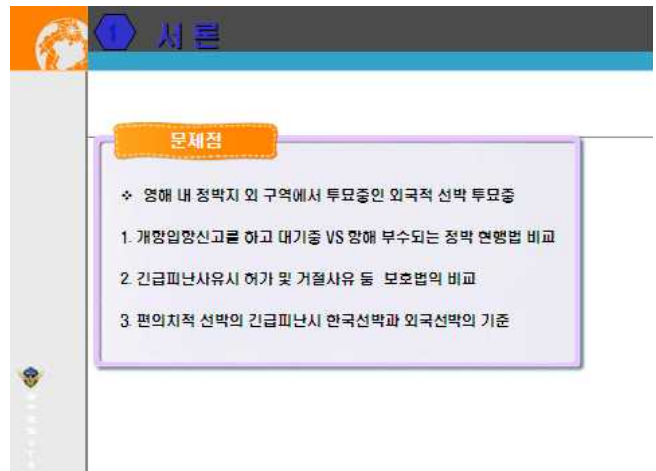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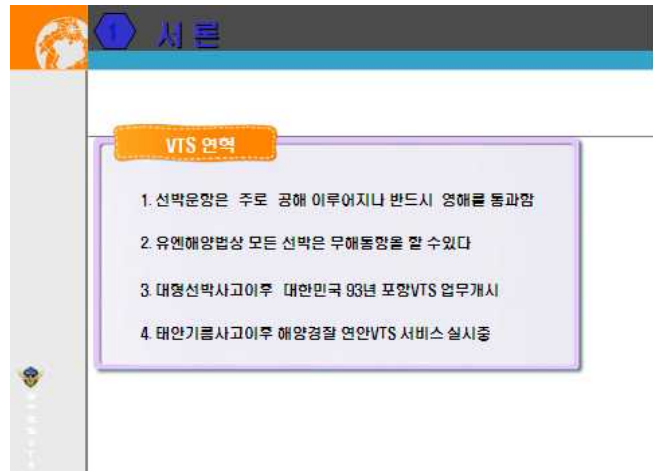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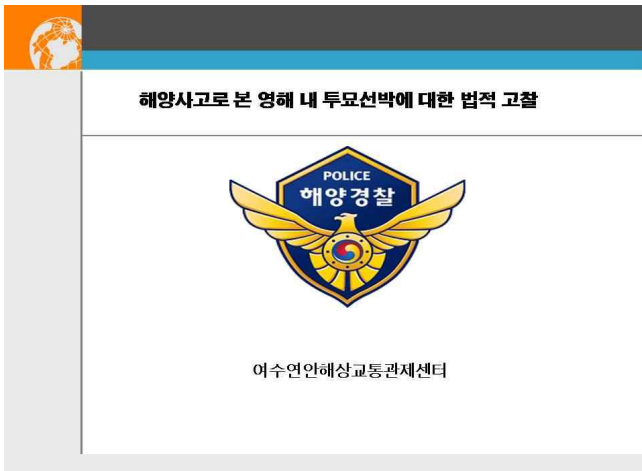
†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여수연안VTS 관제팀장 및 팀원

**요 약** : 선박의 항행은 주로 공해상 이루어지나 입출항은 연안국의 영해를 반드시 경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해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며 모든 선박은 국제해양법상 연안국의 영해의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그러나 국내법에 규정되어 무해통항과 정박지 이외의 영해 내 투묘선박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악용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영해 , 정박지, 무해통항. 긴급피난

**ABSTRACT** : Navigation of ships is mainly being performed through high sea , but inbound/outbound vessels to a port are characteristic of going via territorial sea of coastal countries. At territorial sea, all ships are under the influence of korea' sovereignty and enjoy innocent passage on the basis of UN Convention on the Law at the Sea(UNCLOS). But in the practical points of view, we want to examine legally on these issues , because we have no clear criteria for reasons about anchor except anchorage and innocent passage at territorial sea prescribed at national laws, moreover it can be used maliciously.

**KEY WORDS** : territorial sea, anchorage, innocent passage, emergency sheltering



### 2 영해 내 투묘 중 선박사고

정박지 이외 투묘(2011년 4월 8일 ~22일)를 무단투묘에 따른 무해동향 위반단속시 무해동향에 따른 항해에 부수되는 정박과의 구별기준이 불명확함

**영해 내 충돌사고**

### 3 긴급피난중 선박사고

영국졸항 싱가포르 항해중 폭풍으로 선체 균열이 생겨 기름 유출 스페인당국은 긴급피난을 거절하고 130여 회 외해로 예인하여 침몰한 사건이다

**프라스틱자침몰사건**

### 2 영해 내 투묘 중 선박사고

연대오일뱅크 부두에 입항대기 <-> 환경연합단체 주장 유조선 불법 정박 해사안전법상 예외적 정박 허용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장애부수되는 투묘

**배안기름유출사고**

### 3 긴급피난중 선박사고

제15호 태풍 몰라벤을 피하기 위해 원도에서 정박중 강풍에 떠밀려 해안가 절벽 좌초되어 해경에 의해 선원 16명(중국인 선원 14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이 구조

**카이성좌초사건**

### 2 영해 내 투묘중 사고

개항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대기중과 항해에 부수되는 정선이나 뱃물 내리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구별기준이 없어 억울소지위험

내용 (예외적 정박허용)	근거
<b>해사안전법</b> 1. 불가항력이나 조난 2. 위험하거나 조난상태에 있는 인명 선박 상륙기를 구조 3. 입항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류장으로 출항하기 위하여 대기 4. 선박별 제호 등내에 따라 불특정상에서의 기항 허가를 받고 대기	법 30조, 시행규칙 26조
<b>개항조서</b> 1. 해당사고 피하기 위한준비나 그외의 부속적인 사유 2.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 미비로 인하여 즉시 해당수역에 입항하게 신고	법 6조
<b>영해 및 접속수역법</b> 1. 정선이나 뱃물 내리는 행위가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는 경우, 2.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위험하거나, 3. 조난상태에 있는 인명·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	제 10 조
<b>유엔해양법</b> However, passage includes 1. stopping and anchoring, 2. but only in so far as the same are incidental to ordinary navigation or are rendered necessary by force majeure or distress or 3.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assistance to persons, ships or aircraft in danger or distress.	Article 18 Mixing of passage

### 3 긴급피난중 선박사고

긴급피난 발생시 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및 거절사유 요건 애매함

**관련법**

사유	조치내용	근거
<b>영양법</b> 조난·출몰·침몰·고난 등의 위험 1. 위험·출몰·침몰·고난 등의 위험 2.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난 3.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난 4. 조난상태에 있는 인명·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	1. 선박을 인양한 것으로 인출 2.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처	14조 해상법 제 14조 제 1항
<b>수난조법</b> 1. 해상 중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난 2. 선박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난	이동 및 대기 명령 (구조명령)	제 13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
<b>거절사유</b> 해상구조 또는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난이 아닌 경우	이동 및 대기 명령 (구조명령)	제 13조 제 2항 제 1호

### 3 긴급피난중 선박사고

긴급피난시 편의지적 선박의 한국선원 승선시 외국선박과 한국선박의 구분 필요

**선박명**

내 용	근거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원에 따라 발원된 상사명(商標)에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재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代表者)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제 3조
<b>포락스리지</b> 선주 관해(船主)인 소유, 선박 방항(防航) 명령, 그라스, 여객 발원지, 용선 계약서, 일기(日誌) 등	

### 4 결 론

영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강력한 공간  
연안국의 안전을 위해 보호조치를 할수 있다

▶ 영해 내 투요선박 법적지위검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불법투요 VS 해사안전법에서 대기중 구분기준마련  
항해 및 정박지 신설시 근거기준이 행정내부지침인 고시가 적정여부 확인  
장기 투요 선박에 대한 불법여부를 제시하는 관련 법의 **신설**이 요구된다

▶ 긴급피난 보호법의 비교법적  
UN해양법에서 말하는 연안국의 영향을 주는 경우 긴급피난에 대한 거부 및  
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법익에 대해 CASE BY CASE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 및 한국선박과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법 등 관련 법률 검토되어야 한다

### 3 긴급피난중 선박사고

장점 : 세급인건비절약, 각종규제회피, 선박금융지원용이  
단점 : 조난피난처 역외탈세의혹

**편의지적 현황**

No.	Code	Vessel Name	Year	DLN (TON)	DLN (GRT)	Specia (TEU)	Passen (TEU)	Flag
5	HPRC	HANJIN BELBIN	1997	86,400.00	87,200.00	5,200.00	500.00	PANAMA
6	HUBS	HANJIN BRIDGEWATER	2000	74,900.00	80,200.00	8,000.00	600.00	PANAMA
7	HUBP	HANJIN BRIGAPEST	2000	74,900.00	80,200.00	8,000.00	600.00	PANAMA
8	HUBA	HANJIN CHINA	2011	115,410.00	116,534.00	9,800.00	800.00	PANAMA
9	HUCO	HANJIN CHONGQING	2008	74,900.00	80,200.00	8,000.00	600.00	PANAMA
10	HUBS	HANJIN DURBAN	2000	40,400.00	41,700.00	4,270.00	340.00	PANAMA
11	HUBU	HANJIN ELSHOPE	2012	141,734.00	144,975.00	12,100.00	800.00	SOLE OF SAUDI
12	HUBI	HANJIN ISTYRA	2008	40,400.00	41,700.00	4,270.00	340.00	PANAMA
13	HUBG	HANJIN HAMBURG	2011	91,821.00	122,454.00	8,000.00	700.00	PANAMA
14	HUBT	HANJIN HONGKONG	2008	40,400.00	41,700.00	4,270.00	340.00	PANAMA
15	HUBD	HANJIN HONGKONG	2010	115,410.00	116,534.00	9,200.00	800.00	PANAMA
16	HUBL	HANJIN LONG BEACH	2010	91,821.00	122,454.00	8,000.00	700.00	PANAMA
17	HUBA	HANJIN LOS ANGELES	1997	63,754.00	62,870.00	6,000.00	370.00	PANAMA
18	HUBF	HANJIN MALTA	1993	63,200.00	62,800.00	6,000.00	350.00	COSECO

출처 : [http://www.panama.com/panama/SHIP\\_HUBA\\_1180.htm](http://www.panama.com/panama/SHIP_HUBA_1180.htm) (한글판은 선박명도 확인 가능)

참 고 문 헌

- [1] 2012년 개정판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및 관계된 국제법규해설
- [2] 제 3차 UN 해양법
- [3] 인천해심 특 제2008-23호
- [4] 부산해심 제2011-033호

### 6 긴급피난중 선박사고

**비교법적**

목적	대한민국의 연안에서 일어난 선박사고의 원인과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를 방지하고 선박사고조사에서 각 조항을 적용하여 선박의 안전과 조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
장점	대한민국 연안 내 사고 발생하면, 당사국(船主)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 조사 및 원인을 규명하여 배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것
단점	외국선박(선박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국(船主)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 조사 및 원인을 규명하여 배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것
목적	대한민국의 연안에서 일어난 선박사고의 원인과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를 방지하고 선박사고조사에서 각 조항을 적용하여 선박의 안전과 조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
장점	대한민국 연안 내 사고 발생하면, 당사국(船主)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 조사 및 원인을 규명하여 배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것
단점	외국선박(선박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국(船主)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 조사 및 원인을 규명하여 배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것